

2019년 25회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총평

작성자 오민철법무사

제25회 기출문제는 ① 금전에 대한 지급청구였다는 점 ② 원, 피고 이당사자대립당사자의 관계를 물었다는 점 ③ 주관적 병합이 문제되지 않았다는 점 ④ 피고의 인적사항이 문제 자체에 기재되지 않았고, 차용증등 증거서류를 통하여 찾게 하였다는 점에서 작년 24회(보증금, 권리금) 기출문제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변제충당의 쟁점은 제19회, 제14회에서 출제된 바 있었는데, 채무자의 변제액이 수개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 하고, “각 채권이 변제기가 도래한 바, 이율이 더 높은 채권에 우선 충당된다는 점”, “이자가 전부 소멸된 경우, 변제일로부터 다음날부터 가산 이자를 부가한다는 점” 을 기출문제를 통하여 숙지하고 있었다면 당해년도 기출문제를 푸는데 법리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출문제에서 “이자의 기산점을 2019. 1. 1.로 한정” 하고 있었고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은 가산하지 않는다는 점” “지연손해금율의 산정에 신경을 써달라고 한정된 점” 에 비추어보면, 충당에 따른 각 채권의 원금 잔액이 얼마인지,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이율(연 12%)과 약정이율(월 0.5% = 연 6%, 월 1.5% = 연 18%)을 비교하여 이를 청구취지에 얼마나 정확하게 기재하였는지가 배점상 차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제25회 기출문제는 여타의 기출 문제와 달리 설문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법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타 기출문제에서 지속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하게 한 점, 원, 피고의 주소지가 각 서울 서초구, 강남구라는 점을 고려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이라고 기재하셨으면 큰 무리가 없으리라 보입니다.

다들 시험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합격을 기원합니다.

2019년 25회 법무사 2차 시험 민사사건관련서류의 작성 해설

소가 240,000,000원
인지액 1,015,000원 (240,000,000원 × 10,000분의 40 + 55,000원)

소 장

원고 김상훈 (701104-112233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전화번호 : 010-1234-7777, 전자우편 : ksh@kmail.com

피고 하용주 (770201-1987654)

서울 강남구 자곡로 337

전화번호 : 010-4321-9876

대여금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0.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제2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금전소비대차 계약체결사실 및 이행기의 도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1. 피고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0.5 %로 하여 대여하였고, 2018. 1. 1. 1억원을 변제기 2018. 12. 31. 이자

월 1.5 %로 하여 대여하였습니다. 한편 대여금과 관련된 이자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그달 말일에 후납하기로 하였습니다. [갑 제1호증 2017. 1. 1.자 차용증, 갑 제2호증 2017. 1. 1.자 이체확인증, 갑 제3호증 2018. 1. 1.자 차용증, 갑 제4호증 2018. 1. 1.자 이체확인증 참조]

한편 2017. 1. 1.자 대여금 원금 2억원,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원은 2018. 12. 31.로 변제기가 도래한 상태이나, 피고는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17. 12. 31.까지 위 각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다가, 2018. 1. 1.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피고는 2018. 12. 31. 9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현재까지 잔여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갑 제5호증 변제요청서, 갑 제6호증 변제요청서에 대한 답변, 갑 제7호증 입,출금거래내역 참조]

3. 변제충당

2018. 12. 31. 기준, 원고는 ① 2017. 1. 1.자 대여금 원금 2억원, ② 위 2억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0.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 1,200만원, ③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원, ④ 위 1억원에 대하여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1,8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17. 1. 1.자 대여금 원금 2억원,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원은 2018. 12. 31.로 변제기가 도래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변제한 9,000만원은 각 채권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변제한 민법 제479조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되어야 하며, 나머지 잔여액은 민법 제477조 제2호에 따라 약정 이율이 높아서, 변제이익이 많은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원에 충당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2018. 12. 31. 변제한 9,000만원은 2억원에 대한 약정이자 1,200만원, 1억원에 대한 약정이자 1,800만원에 충당되고, 나머지 잔액 6,000만원은

2018. 1. 1.자 대여금 원금 1억원에 충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론

원고는 변제충당에 따라 피고에게 대하여 ① 2017. 1. 1.자 대여금 원금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월 0.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② 2018. 1. 1.자 대여금 잔액 4,0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1. 갑 제1호증 2017. 1. 1.자 차용증
2. 갑 제2호증 2017. 1. 1.자 이체확인증
3. 갑 제3호증 2018. 1. 1.자 차용증
4. 갑 제4호증 2018. 1. 1.자 이체확인증
5. 갑 제5호증 변제요청서
6. 갑 제6호증 변제요청서에 대한 답변
7. 갑 제7호증 입,출금거래내역

첨부서류

- | | |
|-----------------|------|
| 1. 위 각 입증방법 | 각 2통 |
| 2. 소장부분 | 1통 |
| 3. 송달료납부서 | 1통 |
| 4. 서류작성 및 제출위임장 | 1통 |

2019. 9. 20.

위 원고 김상훈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